

## 국내 헌혈예치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동희<sup>1</sup> · 오덕자<sup>2</sup> · 김현옥<sup>3</sup>

랩지노믹스 의학연구소<sup>1</sup>,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sup>2</sup>,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sup>3</sup>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Blood Pre-Deposit System in Korea

Dong Hee Seo<sup>1</sup>, Deokja Oh<sup>2</sup>, Hyun Ok Kim<sup>3</sup>

LabGenomics Clinical Laboratories<sup>1</sup>, Seongnam, Nambu Blood Center, Korean Red Cross<sup>2</sup>,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up>3</sup>, Seoul, Korea

The certificate of blood donation was introduced in 1975. Blood donor receives the certificate after donation. The person who has this certificate can receive one unit of blood component transfusion without charge in the hospital when he needs transfusion. The donor can use it for himself or anyone else whom it may concern, if necessary. This blood pre-deposit system in Korea is regulated by Transfusion Law. The government health insurance budget and pre-deposit foundation budget support the reimbursement fee for blood. Whenever blood centers collect blood from donors, they deposit 2,500 KRW into the pre-deposit foundation budget. The return rate of certificates was 15-28% and recently showed a gradual decrease to 13% due to the extension of coverage by government insurance for cancer patients, who are the main transfusion candidates. This system has contributed to the shift from paid donation to voluntary donation for the past 40 years. However, because this certificate imposes financial incentives for donors, the spirit of voluntary non-remunerated donation can be abused. If the transfusion fee is fully covered by government budget, it might be possible to discontinue the use of the certificate in order to implement true voluntary donation. (Korean J Blood Transfus 2014;25:1-9)

**Key words:** Donation, Certificate, Pre-deposit system

#### 서론

국내에서 헌혈을 하면 헌혈자에게 헌혈증서가 주어지고, 나중에 본인이나 타인이 불의의 사고, 질환 등으로 수혈을 받을 때 이 헌혈증서를 의료 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혈예치제

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헌혈증서는 1975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나라 혈액사업의 구조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전세계적으로 헌혈에 대한 보상 개념에서 자발적 무상헌혈로 헌혈문화가 정착되면서 헌혈증서와 같은 보상 제도는 사라졌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

Received on March 12, 2014. Revised on April 8, 2014. Accepted on April 9, 2014

Correspondence to: Hyun Ok Kim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2444, Fax: 82-2-313-0956, E-mail: hyunok1019@yuhs.ac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는 상황이 되었다.<sup>1,2)</sup>

우리나라의 헌혈증서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헌혈에 대한 기념품보다는 헌혈보상에 가깝다. 헌혈증서는 초기에는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서 무상 수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990년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헌혈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헌혈자는 혈액을 헌혈하여 환자에게 치료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헌혈증서를 양도하여 수혈 받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서 헌혈증서를 모아 환자를 돕는 미담이 일반 대중매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헌혈증서의 타인양도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헌혈자들에게 큰 보람을 주고 있다. 이는 2009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혈액사업 인식도 조사에서 전체 1,144명의 일반인 중 67.1%가 헌혈증서는 봉사하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응답하였고, 63.6%가 유용한 제도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헌혈증서를 주지 않아도 헌혈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로 조사되어, 국민에게는 아직도 헌혈증서 제도가 헌혈을 하게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sup>3)</sup>

미국에는 1970년대 중반에 대체 헌혈시스템(replacement system)이 있었다.<sup>4)</sup> 이는 혈액을 사용할 경우, 사용한 혈액량 또는 그 이상의 혈액을 그 가족들이 대신 헌혈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또는 회사와 같은 단체가 대체 헌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직접적인 대체 헌혈 외에, 신용방식(credit plan)과 보장방식(assurance plan) 형태의 대체 시스템도 있었다. 신용방식은 어떤 그룹이 헌혈할 경우 헌혈횟수에 따라 신용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그룹의 회원이 혈액을 사용할 경우 신용포인트를

차감하는 시스템이었다. 보장방식은 헌혈횟수에 따라 수혈을 보장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직원의 25%가 매년 헌혈을 하면, 그 직원과 가족의 수혈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물론 현재는 더 이상 대체 헌혈 시스템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sup>5)</sup>

헌혈예치제도는 대체 헌혈시스템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래에 수혈 받을 혈액을 미리 헌혈해 놓는다는 것이다. 헌혈자는 헌혈한 후에 헌혈증서를 받게 되며,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의료기관 수혈비용의 보상을 위해,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은 헌혈을 받을 때 마다 헌혈자 한 명당 2,500원씩 헌혈환급예치금을 현재 적립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혈액수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것이 헌혈환부예치금제도이며, 초기에는 환급액이 미미하다가 헌혈증서 양도에 의하여 수혜대상자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기도 하여, 혈액수가의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 헌혈증서 도입 배경과 연혁 그리고 헌혈환급적립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선진혈액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헌혈보상제도로서의 헌혈예치제도의 폐지 및 이를 위한 무상수혈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본 론

### 1. 헌혈증서의 도입과 역사

헌혈증서는 매혈이 주된 혈액공급 수단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대한혈액관리협회에 의해 헌혈계몽 축진의 한 수단으로서 정식으로 1975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매혈과 헌혈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던 혈액원들로 구성된 대한혈액관



**Fig. 1.** Issued the certificate of blood donation by Korea Association of Blood Management (April, 1981), by Korean Red Cross (November, 1981) and recent certificate (From left).

리협회는 국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헌혈확대 방안의 하나로 본인과 직계가족 중 수혈을 필요로 할 때 헌혈한 만큼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헌혈환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sup>6)</sup> 또한 헌혈증서를 갖고 온 사람에 대한 수혈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헌혈환부예치금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를 혈액수거에 반영하도록 하여 혈액수거가 인상되었으며, 그 중의 일부를 헌혈환부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대한혈액관리협회가 1981년에 해체되고 혈액사업이 대한적십자사에 이관됨에 따라, 헌혈증서의 발행 주체가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변경되었다(Fig. 1).

헌혈증서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헌혈예치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1970년 초반에 세브란스병원, 적십자혈액원, 한국헌혈협회 등 헌혈기관은 헌혈한 사람에게 헌혈한 혈액의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헌혈 예치제도를 시작하였다. 이 경우 헌혈자가 혈액을 사용하려면 자기가 헌혈했던 기관을 찾아가서 혈액을 받아와야만 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혈액관리협회는 모든 헌혈기관에서 통일된 헌혈증서를 교부하고, 헌혈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헌혈환부예치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현재 국내 혈액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헌혈예치제도를 제안하였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197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헌혈자 또는 헌혈자가 지정하는 사람만이 무상 수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990년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증서의 타인 양도가 가능해졌다. 이후 헌혈환부예치금의 과다 지출로 인해 적립금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에 헌혈증서의 타인 양도 금지가 제안되었지만 여론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 2. 헌혈증서 관련 법령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관리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으면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발급하게 되며,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수혈을 받은 후 의  
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  
액제제를 수혈받게 된다는 법령이다(Table 1). 혈

액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헌혈증서로 무상으로 수  
혈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량을 헌혈 1회당 혈액제  
제 1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증서로 인한 수

**Table 1.** The law and ordinance related with the certificate of blood donation

혈액관리법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헌혈 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관리한다.
  -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혈액관리시행령

제8조(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 삭제 <2009.1.30>

제9조(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 제5호에 따라 헌혈환부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을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로 한다. <개정 2005.1.29>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공급가액과 의료기관의 혈액관리료 및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혈비용청구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혈자 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은 수혈을 받은 자의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④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수혈비용청구서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무상수혈인원	무상수혈량(ml)	수혈비용	청구금액	헌혈증서매수
<p>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 소지자에 대한 수혈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첨부 : 1. 헌혈증서      매                  2. 수혈자내역서    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의료기관명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p> <p>대한적십자사총재 귀하</p>				
31312-06311일		210mm×297mm		
99.4.1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 <sup>2</sup> (재활용품))		

**Fig. 2.** The request form for transfusion fee.

혈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혈비용청구서’ 양식도 규정되어 있다(Fig. 2).

헌혈환급적립금의 사용은 혈액관리법 제15조에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는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이다.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항목은 2009년에 삭제되었다. 2012년 10월 혈액관리법이 개정될 때 헌혈환부예치금이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에

서는 아직 헌혈환부적립금이란 용어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현재 헌혈환부와 헌혈환금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3. 헌혈환금예치금 사용 현황

헌혈환금예치금은 2003년 1월에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다. 헌혈증서의 타인양도 확대 이후 수혈비용에 대한 혈액환금예치금의 환급률이 증가하면서 적립금이 급격히 고갈되어 추가적으로 2005년 2월에 2,000원으로, 2007년 3월에 2,500원으로 인상이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혈환금 비율은 1980년대 초기에는 예치금 대비 0.3~0.6%로 낮아 헌혈환금적립금이 크게 누적되었고, 적립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헌혈증서의 타인양도가 가능해지면서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환급비율이 매해 100%를 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헌혈환금 비율이 70% 이상을 보여 그동안 누적되었던 헌혈환금적립금이 소진되어, 혈

액관리비용의 적자와 혈액수가 인상의 한 요인이 되었다. 2010년부터는 적립금 환급률이 50% 미만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도의 헌혈환금적립액은 약 66억 7천만원이었고, 수혈보상으로 환급된 비용은 약 24억 6천만원으로 환급비율은 36.8%였다(Table 2).<sup>7)</sup> 이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헌혈증서가 되돌아오는 회수 비율이 14~28%이고 그 이후도 증서가 회수되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혈액수가의 환급액수는 급격히 줄고 있어 그 누적금액이 42억 1천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2005년과 2007년에 헌혈환금예치금의 인상과 암환자를 기준으로 하여 혈액수가에 대한 환자 부담금이 2009년 12월부터 5%로 낮아지면서 수혈비용을 위한 헌혈환금액의 절대 액수가 줄어든 것이 큰 이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환자가 적혈구 농축액 1단위를 수혈받는 경우, 직접 환자가 내는 수혈비용은 이전의 5,000원 내지 10,000원에서 약 2,500원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또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실손보장보험에 가입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혈비용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

**Table 2.** The certificate of blood donation (CBD) and refunding of deposit (2000~2012)

Year	Issued CBD (piece)	Returned CBD	Return rate (%)	Annual deposit (1,000 KRW)	Refunded (1,000 KRW)	Refunding rate (%)
2000	2,471,919	433,888	17.6	2,466,918	3,144,177	127.5
2001	2,526,297	424,485	16.8	2,504,991	3,187,297	127.2
2002	2,521,285	372,734	14.8	2,497,824	2,763,166	110.6
2003	2,535,343	354,061	14.0	3,746,367	2,742,147	73.2
2004	2,325,108	654,845	28.2	3,423,126	5,186,876	151.5
2005	2,274,336	461,386	20.3	4,370,615	4,426,261	101.3
2006	2,302,541	436,311	18.9	4,527,798	3,988,656	88.1
2007	2,087,762	421,892	20.2	4,924,809	3,767,245	76.5
2008	2,347,184	438,196	18.7	5,733,095	4,230,164	73.8
2009	2,569,954	504,329	19.6	6,305,322	4,804,684	76.2
2010	2,664,492	403,854	15.2	6,538,805	3,034,961	46.4
2011	2,616,575	383,684	14.7	6,414,237	2,731,341	42.6
2012	2,722,698	357,922	13.1	6,677,265	2,458,569	36.8

로부터 직접 지원받기 때문에, 헌혈증서에 의한 혈액대금 경감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매우 적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매년 헌혈환급적립금의 누적 적립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혈 비용의 보상 이외에, 2002년도에 대한수혈학회가 주관한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과제 수행과 2006년도 특정수혈부작용 실태 조사에 헌혈환급적립금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이 주관하는 ‘혈소판수혈불응증 환자를 위한 HLA 및 HPA 적합 헌혈자 관리체계 구축’과 ‘희귀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자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 대해 혈액관리관련 연구용도로서 헌혈환급적립금의 사용이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sup>8)</sup>

#### 4. 무상 수혈

매혈로부터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기 위한 헌혈계몽운동의 일환으로 1975년에 도입된 헌혈예치제도를 위한 헌혈증서는 “건강할 때 헌혈하여 필요할 때 찾아쓰자”라는 헌혈계몽 대중광고와 함께 도입 2년 만에 헌혈실적을 77%로 끌어올리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0% 헌혈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혈액사업은 이미 선진화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헌혈 보상제도인 헌혈증서는 온전한 자발적 무상헌혈의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여겨진다. 헌혈증서가 갖고 있는 금액은 이제는 작아졌지만 아직도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무상헌혈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많은 헌혈자들이 헌혈증서를 모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그 활용도는 과거에 비하여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보

상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임은 분명하므로 이제는 이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사료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임하여 국가가 발행하고 있는 헌혈증서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에 대한 환급기한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수혈비용 청구 시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에 대한 검토와 폐기가 필요하고 결정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의 수혈시스템을 보완 개선한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헌혈증서를 폐기하고 무상수혈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대금 약 2,500억원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제제 대금 약 200억원을 혈액제제 보험청구비용으로 본다면, 국내 혈액성분제제의 수혈비용을 약 2,700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sup>9)</sup> 여기서 수혈 환자 본인 부담금을 5%로 잡는다면 약 135억의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면 무상수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물론 본인 부담금 5%는 암환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암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보다 높아진다. 환자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헌혈증서 관리에서 오는 많은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완전한 100% 무상헌혈 및 무상수혈 국가로의 진입 효과는 국가의 혈액대금 지원 비용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2,500원씩 적립되는 혈액환급금의 조정으로 혈액관리비용의 추가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그 동안 헌혈예치제도란 이름으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처럼 취급된 헌혈증서로 인하여 송고한 헌혈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헌혈증서를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헌혈환급예치금을 적립하고 지출하는 부분에 많은 비용적, 인력적

인 소모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헌혈증서의 폐지에 의한 완전한 무상헌혈 및 무상수혈의 성취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가치 있는 일로 사료된다.

혈액제제는 그 나라 국민이 헌혈하여 공급하는 공공재이다. 최근 암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가 고려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이 무상으로 헌혈한 혈액을 환자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국내 혈액사업에서 헌혈증서제도를 가장 빠르게 여론의 반대 없이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혈액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다. 우리나라가 무상수혈을 도입한다면 그 역시 복지국가로서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는 일이기도 하다.

## 결론

1975년에 시작된 헌혈예치제도와 헌혈증서의 사용은 국내 혈액 공급을 매혈에서 헌혈로 전환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09년 이전까지는 백혈병 환자 등을 돕기 위한 헌혈 증서의 기부와 그 활용이 높았지만 이후로는 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이 95%로 높아지면서, 2010년 이후에는 헌혈증서를 통한 수혈비용의 환급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매혈로부터 국민의 헌혈로 전환하기 위해 보상제도로 시행하였던 헌혈증서제도는 100% 자발성 무상헌혈을 구현한 지금의 시점에서 폐기되어야 할 제도이다. 또한 수혈비용 지급을 위해 생겨났던 헌혈환부적립금도 최근 그 적립금액이 약 66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용도변경, 혈액수가 조정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대신하여, 정부가 수혈비용을 100% 보장하는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무상수혈이 도입되는 경우 헌혈예치제도와 헌혈증서제도도 여론의 반대 없이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요약

헌혈증서는 1975년에 도입되었다. 헌혈을 하면 헌혈자는 헌혈증서를 받는다. 이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수혈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한 단위의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헌혈증서는 헌혈자 본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누구에게나 양도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혈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 헌혈예치제도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예산과 헌혈환부적립금이 혈액대금의 지분을 지원한다. 헌혈을 받는 혈액원은 헌혈을 받을 때 2,500원을 헌혈환부예치금으로 적립한다. 헌혈증서의 회수율은 15~28%였고, 최근 13%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혈의 주요 대상자인 암환자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 40년간 매혈을 자발적인 헌혈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헌혈증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함축하고 있어 순수한 무상 헌혈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가 수혈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무상 수혈이 도입되면, 헌혈증서를 폐지하고 진정한 자발적인 헌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1. Farrugia A, Penrod J, Bult JM. Payment, compensation and replacement—the ethics and motivation of blood and plasma donation. *Vox Sang* 2010;99:202-11
2. Abolghasemi H, Hosseini-Divkalayi NS, Seighali F. Blood donor incentives: A step forward or backward. *Asian J Transfus Sci* 2010;4:9-13



3. Blood Service Headquarters of Korean Red Cross. The survey report of perception degree for blood service in 2009. 2009:90-1
4. BONK DV. Replacement systems. In: Kohr L, Sayers M. Motivating donors in today's world: recruitment and retention. Bethesda, Md: AABB Press, 1998:169-71
5. Glynn SA, Williams AE, Nass CC, Bethel J, Kessler D, Scott EP, et al; Retrovirus Epidemiology Donor Study. Attitudes toward blood donation incentives in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donor recruitment. Transfusion 2003;43:7-16
6. Kim KH, Lee SY, Kang DY. The history of Korean blood donation movement. Paju: Nanam, 2011:209-38
7. Korean Red Cross. Blood services statistics 2012. 2013:69
8. Blood Transfusion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Red Cross. Proceedings of 16th symposium of blood donation and transfusion. 2013:191-238
9. Korean Red Cross. Blood services annual report 2012. 2013:62